#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필모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711

발의연월일: 2020. 11. 25.

발 의 자:정필모·이용빈·유정주

한준호 • 이학영 • 신영대

변재일 • 허 영 • 박광온

오영환 · 김성주 의원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임원의 결격사유 제한기간이 「방송법」 등 다른 법령에서는 2년이 아니라 3년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현행법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임원의 퇴직 규정이 없어 운영상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

이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임원의 당연 퇴직 규정을 마련하고 임원의 결격사유 제한기간을 조정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53조).

#### 법률 제 호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3호 중 "2년"을 "3년"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임원의 직에서 당연히 퇴직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흥재단 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임원은 제53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3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제53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람은 진흥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	3
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	
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부터 <u>2년</u> 이 지나지 아니한	<u>3년</u>
사람	
4.•5. (생략)	4.•5.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이었
	음이 판명된 때에는 임원의 직
	에서 당연히 퇴직한다.
<u>&lt;신 설&gt;</u>	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
	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